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
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영호 (통일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북한이탈주민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, 정착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현재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은 거주지보호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, 적지않은 탈북민들이 학업과 육아,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지보호기간 또는 2년의 추가기간 내에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,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에서 거주지 보호기간을 폐지하고자 함(안 제40조의2)

또한, 교육지원의 대상은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만 25세,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만 35세로 한정하고 있으며, 거주지보호기간 내 또는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, 탈북민의 사회적응에 있어 정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, 종래 나이제한 및 거주지보호기간 등의 조건을 폐지하여, 나이와 보호기간에 관계없이 초중등 또는 고등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

또한,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중 지역 적응센터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제외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착자산형성(미래행복통장) 가입 조건에서 거주지보호기간을 삭제함(안 제40조의2)
- 나. 교육지원의 대상에서 만 25세(초중등교육) 및 만 35세(고등교육) 등 나이제한과 거주지보호기간 이내 등의 조건을 삭제함(안 제45조)
- 다. 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중 지역적응센터 운영 실태점검·평가 업무 및 인가대안학교 교육지원 업무를 삭제함(안 제4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”을 “3개월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보호기간(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) 내에서” 부분을 삭제한다..

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교육지원”을 “교육지원의 대상”으로, “한정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만 25세 미만”에 입학”을 “입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”을 “제2조 각 호의 대학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가목을 삭제한다.

제49조제4항제1호다목을 삭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지원”을 “지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는 제외한다.)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④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통일부장관은 그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(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) 내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~ ⑧ (생략)

제45조(교육지원의 대상)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보호대상자로 한정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

④ -----
-----.

----- 후 -----

-----.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교육지원의 대상) -----
----- 교육지원의 대
상----- 한다.
<단서 삭제>

1. -----
----- 입학 -----

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
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
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
람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
편입학한 사람

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2
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
지의 학교

나. ~ 라. (생 략)

제49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·
위탁) ① ~ ③ (생 략)

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
재단에 위탁한다.

1.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
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
각 목의 사업

가. · 나. (생 략)

다.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운
영 실태점검 · 평가

라. (생 략)

2. ~ 8의2. (생 략)

9. 제45조의2에 따른 학교등의

2. ----- 제2조 각 호
의 대학-----

--

3. -----

<삭 제>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·
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-----

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삭 제

라. (현행과 같음)

2. ~ 8의2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

경비 <u>지원</u>	-- <u>지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는 제외한다.)</u>
10. · 11. (생 략)	10. · 11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통일부 정착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5924